

# 15. 建設 重大災害 事例와 對策

(채석장, 전기공사, 기타공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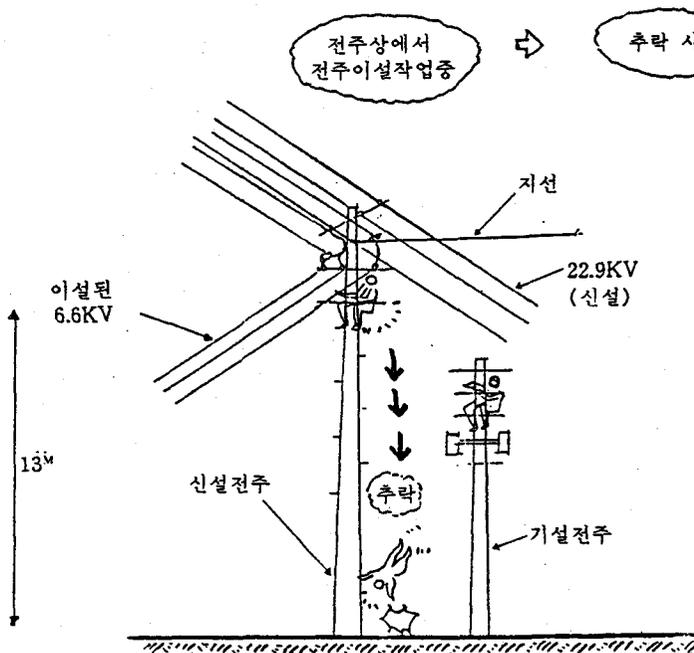
資料提供：韓國土地開發公社

## 1. 추락재해

### 1-1 휴전된 전주위 작업중 추락 사망

#### 1. 재해개요

'93. 12. 1. 10:50경, 제주시 노형동 소재, (유)○○이 시공하는 ○○아파트 외부 전기 인입공사 중, 재해자 전공 ○○○(27세)이 휴전된 전주위에서 작업하던 중 13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.



(재해 상황도)

## 2. 재해상황

- 사고작업은 아파트 현장 및 그 일대의 3상 6.6KV전기를 22.9KV로 승압하기 위한 신설 및 전선 이설 작업임.
- 사고발생 전일까지 전주(CH=16M) 4본 설치 및 전선(22.9KV, 3상)의 일부가 설치완료된 상태였음.
- 사고발생 당일은 현장 대리인과 재해자를 포함 10명이 작업하고 있었으며, 휴전작업(10시 15분)전까지 통전되지 않은 부분의 작업을 실시함.
- 휴전작업후 재해자는 신설 전주(공가식 전주)에서, 동료 근로자는 약 1M떨어진 기설전주(CH=10M)에서 전선 이설작업을 실시함.
- 재해자는 2번째 완금에 3선중 2선을 이설하고 전주의 수직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 첫번째 와 두번째 완금사이에 설치된 지선을 조정하고 다시 3번째 전선을 이설하기 위한 작업중 약 12.5M높이에서 추락하였음.
- 피재자는 1종 안전대와 내전압 및 비래 낙하방지용 안전모를 사용하였으나 안전모의 턱끈을 매지않고 작업하였던 것으로 판단됨.

## 3. 재해원인

-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
  - 체중의 일부를 U자걸이로 하여 안전대에 지지하여야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에서, 안전대의 후크를 D링에 체결후 체결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체중을 안전대에 지지함으로써 불안정 체결상태의 후크가 풀리면서 추락
  - 전주위 작업(고소작업)중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으로 발을 헛딛어 추락

## 4. 재해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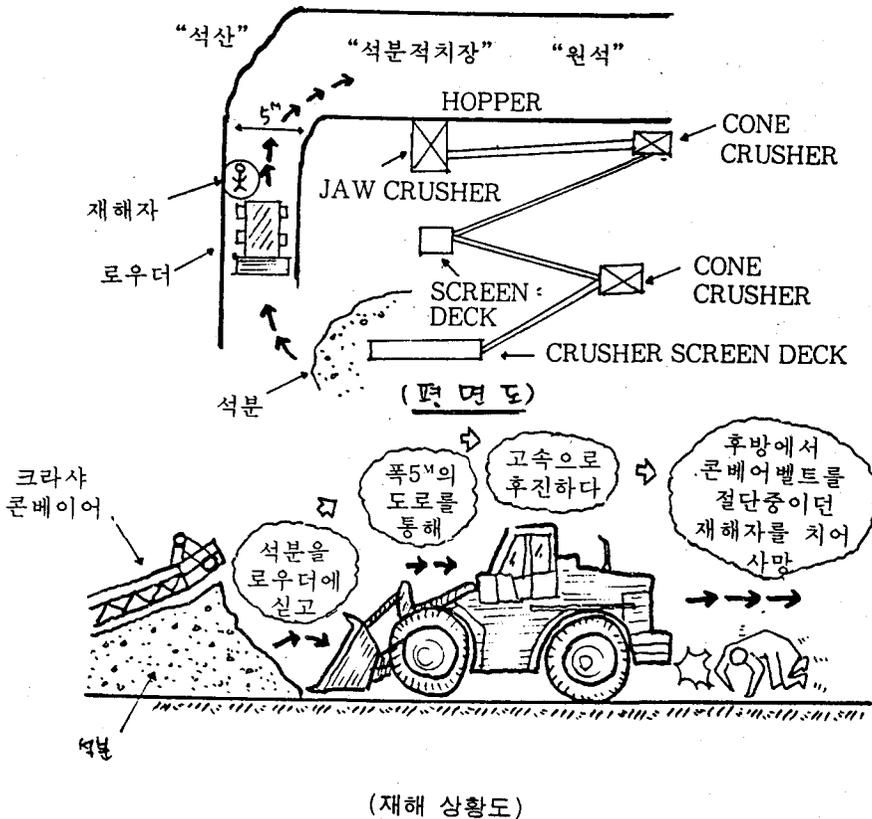
- 전주위에서 안전대 착용시에는 후크와 D링의 체결상태를 전주를 잡고 확인한 후, 안전대에 체중을 지지하여야 함.
- U자걸이 안전대에 보조 로우프에 부착하여 사용
- 안전모의 착용시 턱끈을 매고 작업하여야 함.
- 위험 공종에 해당하는 작업시에는 당해 작업시 불안정한 행동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, 안전장구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철저

## 2. 건설기계장비 재해

### 2-1 채석현장에서 로우더가 후진하다 근로자를 깔음

#### 1. 재해개요

'94. 1. 4. 11:00분경, ○○산업(주) 성산면 낙곡리 409-1 채석 CRUSHER작업장에서, HOPPER에 원석을 운반하던 로우더가 SCREEN DECK에서 나온 석분을 석분적치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후진하던중, 컨베이어 BELT 소단작업을 위해 폐기 BELT 절단작업을 하던 재해자(CRUSHER 부기사)를 치어 사망한 사고임.



## 2. 재해상황

- 사고 로우더는 원석을 HOPPER로 운반하는 작업이 주작업임.
- 원석을 HOPPER로 운반작업중 SCREEN DECK에 부석이 쌓이면 석분적치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병행 실시.
- 재해자는 컨베이어 벨트 소단부분에 사용하기 위해 사고지점에서 폐기된 벨트(너비 60CM, 두께 12MM)를 절단작업 중이었고,
- 사고당시 로우더는 SCREEN DECK에 쌓인 석분을 싣고 후진으로 석분 적치장으로 운반중 재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임.

## 3. 재해원인

- 작업계획의 작성 미흡
  - 셔블로우더등 차량계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는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, 당해 차량계 운반기계등의 능력, 운반물의 형상에 따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작업계획 미수립.
- 작업유도자 미지정 및 출입금지 미실시
  - 차량계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때에는 운반중에 당해 차량계 운반기계 또는 화물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치 않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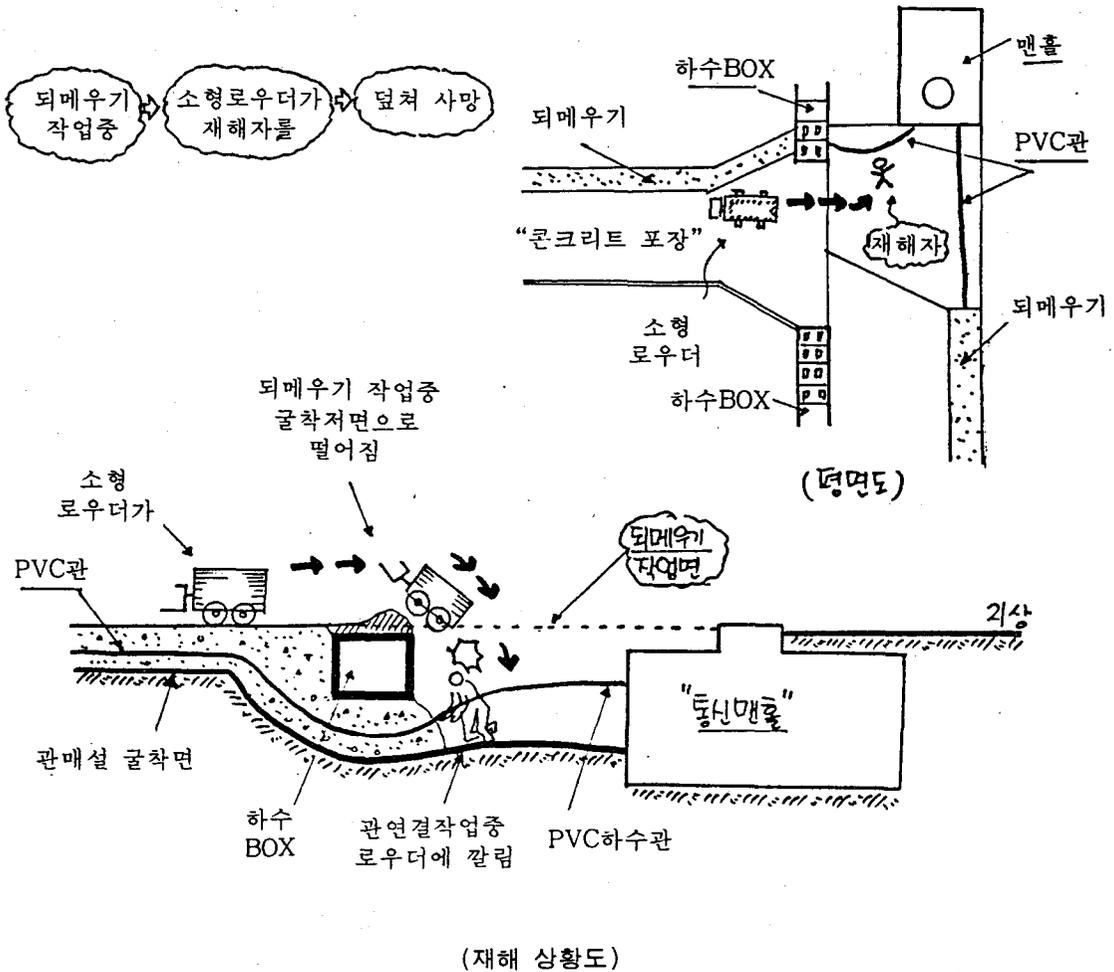
## 4. 재해예방대책

- 작업계획의 작성
  - 셔블로우더, CRUSHER작업 및 골재상하차 작업에 대해서는 각종 차량계 건설기계의 상하차 방법, 신호수 배치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.
- 작업유도자(안전담당자)의 지정 또는 출입금지 조치 철저
  - 차량계 운반기계 작업에 대한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운반로등에 대해서 근로자의 출입제한을 철저히 시행한다.
- 안전교육 실시
  - 차량계 운전원 CRUSHER작업등 유해 위험 작업종사자에 대해서 취업전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1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한다.

## 2-2 퇴메우기 작업중 로우더가 굴착면으로 떨어지며 작업자를 덮침

### 1. 재해개요

'93. 10. 30. 18:20경, 강원 평창 소재, ○○전자통신(주) 평창 6,600회선 신,증설선로공사 현장에서, 퇴메우기 작업을 하던 소형 로우더가 굴착 저면으로 떨어지며, 굴착면 하부에서 통신용 PVC관 연결 작업중이던 재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.



## 2. 재해상황

- 사고작업은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통신 PVC를 매설하는 작업으로 사고당시 3곳에서 작업을 실시함.
- 사고당일 08:00부터 작업을 개시하여 금일 작업량을 거의 완료 상태에서, 마지막 맨홀 부위 PVC 연결 작업 및 되메우기 작업중
- 재해자와 목격자는 굴착면 하부에서 PVC 연결작업을 하고, 소형 로우더는 굴착면에 근접하여 되메우기 작업중 사고발생

## 3. 재해원인

- 관리감독 소홀
  - 사고지점은 하수 BOX를 통과하는 지점으로 보통 지역보다 굴착깊이가 깊어 붕괴, 매몰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했으나
    - 작업계획 미수립후 작업
    -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부재하에 가설 조명 설치 등 안전상의 조치없이 일몰 이후의 야간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사고발생
- 장비의 전도방지조치 미실시
  - 굴착 하부 작업과 되메우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에도 불구하고 유도자 배치없이 작업을 실시함.

## 4. 재해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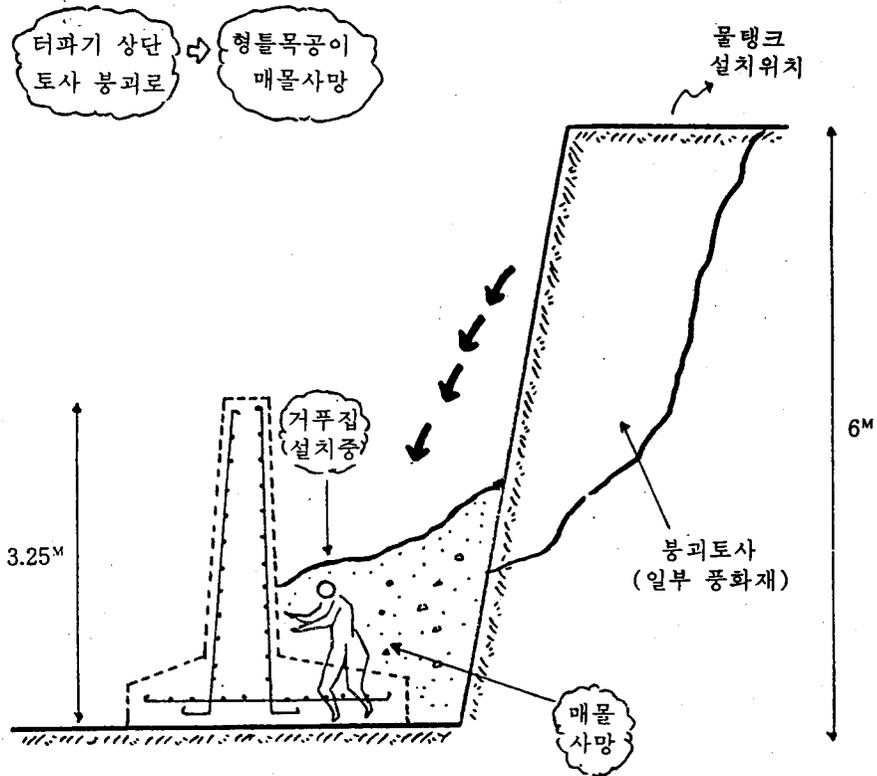
- 관리감독철저
  - 지반 굴착 작업에 있어 매설물등에 의하여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, 안전작업 방법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.
- 장비의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
  -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에 의거 작업실시

### 3. 토사붕괴 재해

#### 3-1 응벽배면 거푸집 띠장작업중 토사붕괴로 매몰사망

##### 1. 재해개요

'93. 11. 17. 10:15경, ○○건설산업(주)가 시공하는 경기 화성군 소재, ○○지역 통합막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, 막사 우측 역 T형 응벽(H=3.0M)후면 거푸집 띠장 설치 작업중, 목공 ○○○(남 46세)이 응벽 배면 터파기 상부 토사의 붕괴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.



(재해 상황도)

## 2. 재해상황

- 통합막사 2층 건물은 기골조 완료되어 내장작업중임.
- 기초부는 기 콘크리트 타설 완료, 벽체부 철근조립 및 거푸집 조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거푸집 외부 띠장(3×3 각재 및 철선 이용)설치중이었음.
- 옹벽 배면의 터파기 높이는 6.0M 법면 구배는 1:0.3내외, 우수에 노출된 상태였음.

## 3. 재해원인

- 토사굴착법면 안전구배 미확보
  - 당초 옹벽 토사 터파기 법면 구배를 1:0.3 정도로 시공, 법면 안전구배 미확보
  - 소단 미설치
- 붕괴위험방지 조치 미실시
  - 안전구배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의 안전조치로서 흙막이 지보공 설치, 기타 우수 유입 방지, 굴착상단 재하금지 등 붕괴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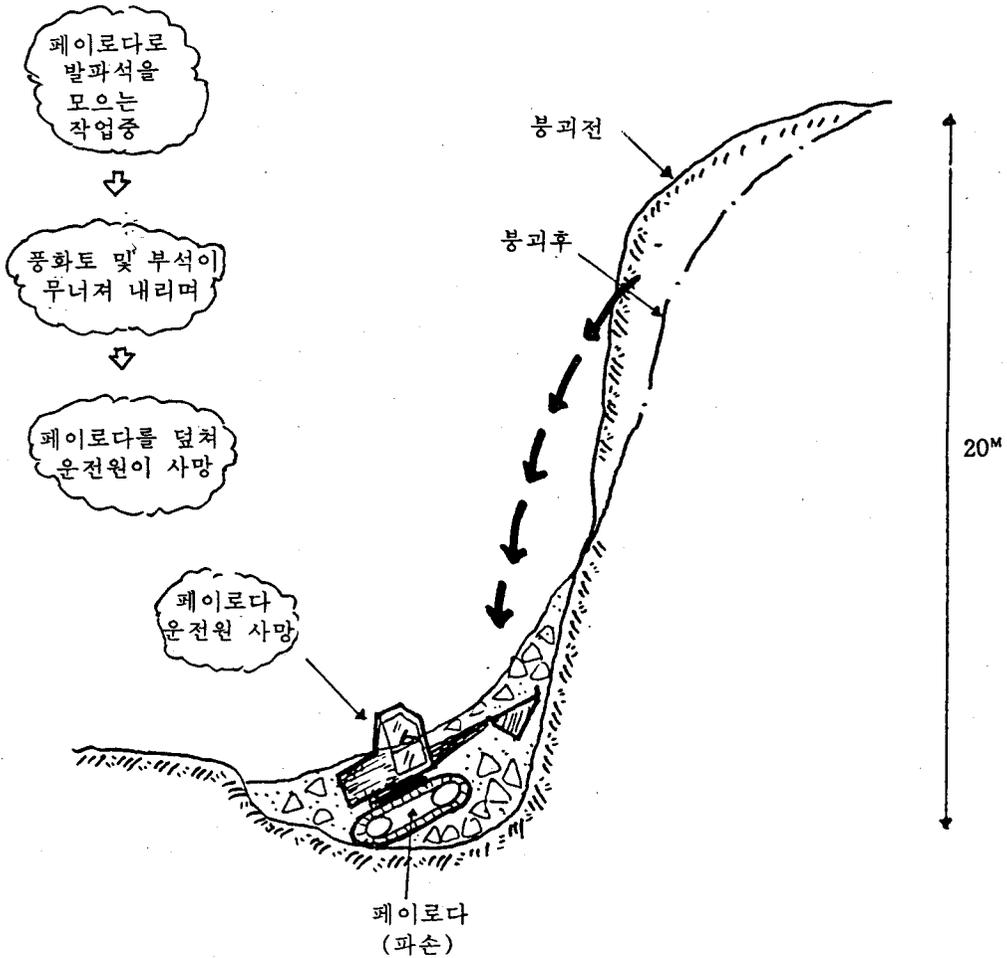
## 4. 재해예방대책

- 굴착법면 안전구배 확보
  - 지반굴착시 굴착면의 구배는 지반구성 토질에 따라 안식각 이내가 되도록 결정하여 적정 위치에 소단을 설치 시공하여야 함.
- 기타 안전조치의 강구
  - 굴착법면의 안전구배를 확보할 부지가 없을 때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하며, 또한 우수의 유입방지, 상부 재하 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.

### 3-2 채석장 절취면 상단에서 토석암괴가 낙하 1명 사망, 2명 부상

#### 1. 재해개요

'93. 11. 20. 06:00분경,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소재, ○○개발(주) 안성석산 암석채취장에서, 절취면 상단으로부터 토석암괴가 붕괴되며 페이로더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재해임.



(재해 상황도)

## 2. 재해상황

- 사고당시 3대의 장비(페이로다, 백호우, 덤프트럭)로 발파원석을 채취 및 DUMP TRUCK에 상차키 위한 집토 작업 실시
- '93. 11. 20 06:00경 바닥이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BACK HOE가 이동중 기울어지자, 인근에 있던 PAYLOADER에게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, 백호우를 세우는 과정에서 갑자기 상부 법면에 있던 풍화토와 부석이 붕괴되며, PAYLOADER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.

## 3. 재해원인

- 높이 20M암 경사면의 구배가 약 1:0.2 정도인 급한 상태에서 CRAWLER DRILL BOOM작업이 가능한 G.L.+2M 부위를 집중 천공 발파하여 경사면의 안정이 크게 훼손됨으로써 경사 선단에 있는 토사 및 풍화토와 중간부에 분포한 편마암 부석이 함께 붕괴되며 사고 발생
- 부석제거 및 법면정리 불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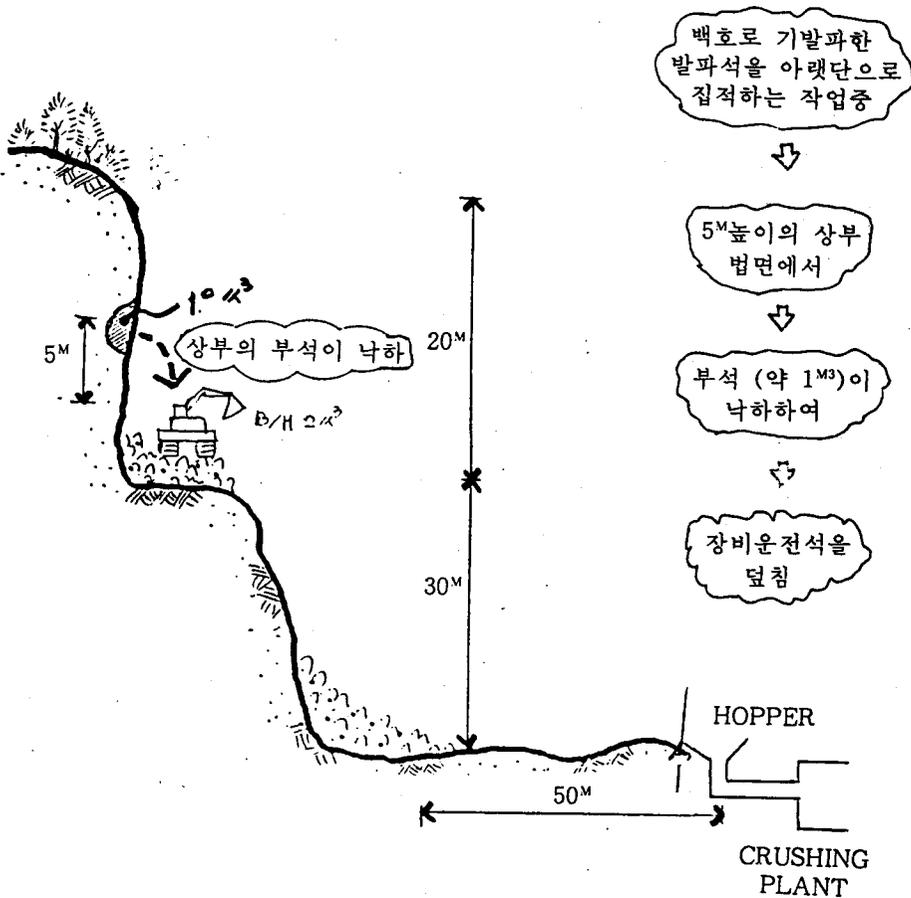
## 4. 재해예방대책

- 암절취 방법개선
  - 암질과 절리등 암반상태에 따라 경사면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구배로 단을 두어 작업 하여야 하며,
  - 발파실시후 암반의 CRACK, 수석등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이에 따른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, 실시하여야 함.
  - 상부에 있는 토사와 풍화토 및 부석등을 제거하고 소단을 설치토록 하며, 안전성을 고려 경사를 가능한 완만하게 유지토록 함.
- 낙석 위험 반경내에서는 작업 및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토록 함.

### 3-3 부석이 백호 운전석을 덮쳐 압사

#### 1. 재해개요

'93. 11. 4 10:00경 경북 고령군 개진면 소재, ○○산업(주) 고령 채석장에서 재해자(38세, 장비운전원)가 백호를 이용하여 11. 3일 기발파한 발파석을 아랫단으로 집적하기 위하여 2단의 버력위에서 작업하던중 장비로부터 5M높이의 법면 상부의 부석(1M<sup>3</sup>)이 낙하하여 운전석을 덮쳐 사망한 재해임.



(재해 상황도)

## 2. 재해상황

- 기발파한 발파석중 2단에 쌓여 있는 발파원석을 백호를 투입하여 지면까지 내리면 그것을 PAYLOADER로 CRUSHER HOPPER까지 운반하는 과정으로
- 현장상태는 발파 BENCH 높이가 20M정도로 과다하게 조정되었으며, 구배 또한 90° 및 역구배이며 각종 부석제거가 미흡하여, 암상태는 수평 및 수직으로 CRACK이 많이 발달한 상태임.
- 백호작업에 따른 진동영향으로 CRACK이 발생된 부석이 낙하하여 운전석을 덮친 재해임.

## 3. 재해원인

- 수직 천공에 의한 대발파로 BENCH높이 과다(20M정도)조성 및 급구배(90° 및 역구배)
- 부석제거 미 실시 상태에서 장비접근
- 장비작업시 감시인 미배치

## 4. 재해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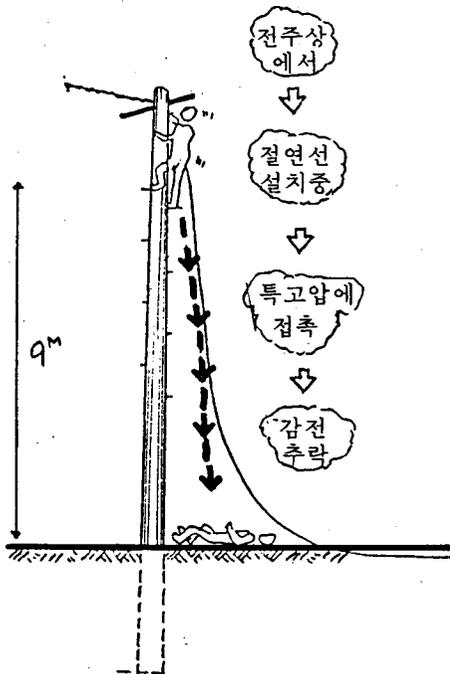
- BENCH-CUT공법에 의한 수직 천공 발파로 상부에서 하단측으로 법면을 안전구배로 유지하면서 개발하고 BENCH-CUT불가시는 법면 높이 H=15M이하로 진입로를 설치하고 수평 천공에 의한 소규모 발파로 전환하고 법면정리를 철저히 한다.
- 장비 진입전에 부석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고 장비작업시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한다.

## 4. 감전재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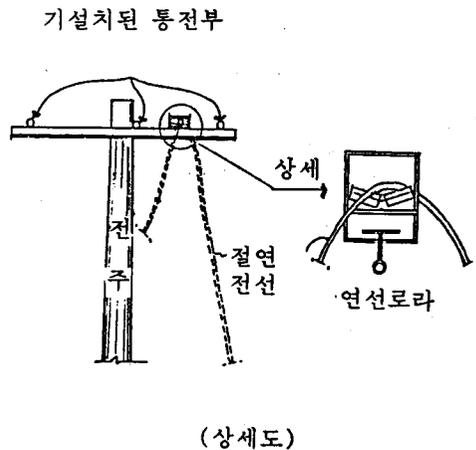
### 4-1 전주상에서 전선 설치작업중 감전

#### 1. 재해개요

'93. 10. 25. 16:30분경, 경남 합천군 묘산면 소재, ○○전력(주) 묘산선 절연전선장치공사 현장에서, 외선전공인 재해자(27세)가 전주상에서 절연전선을 설치하던중, 특고압에 접촉 감전되어 9M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.



(재해 상황도)



(상세도)

## 2. 재해상황

- 사고작업은 기설치 충전중인 나전선을 절연전선으로 교체하는 공사임.
- 사고당시 동료작업자 4명은 전주상에서 절연전선을 당기는 작업을 하고 피재자의 2명은 각 전주의 절연전선이 당겨지는 상태를 확인하던중, 사고전주에서 잘 당겨지지 않자, 재해자가 전주에 올라가 절연전선을 왼손으로 잡고 잘 당겨지도록 도와주다, 왼손이 충전중인 22,900V에 접촉 감전되면서 9M아래로 추락 사망함.

## 3. 재해원인

- 작업방법 불량
  -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임에도 정전 미조치
  - 정전작업 실시가 곤란할 경우의 활선작업시 충전부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
- 관리책임자 감독 소홀
  - 활선 근접작업시 충전부 절연용 방호구 설치 또는 안전작업 방법등 안전상의 조치여부의 감독을 소홀히 함.
- 근로자 안전의식 결여
  - 자만감으로 안전의식 결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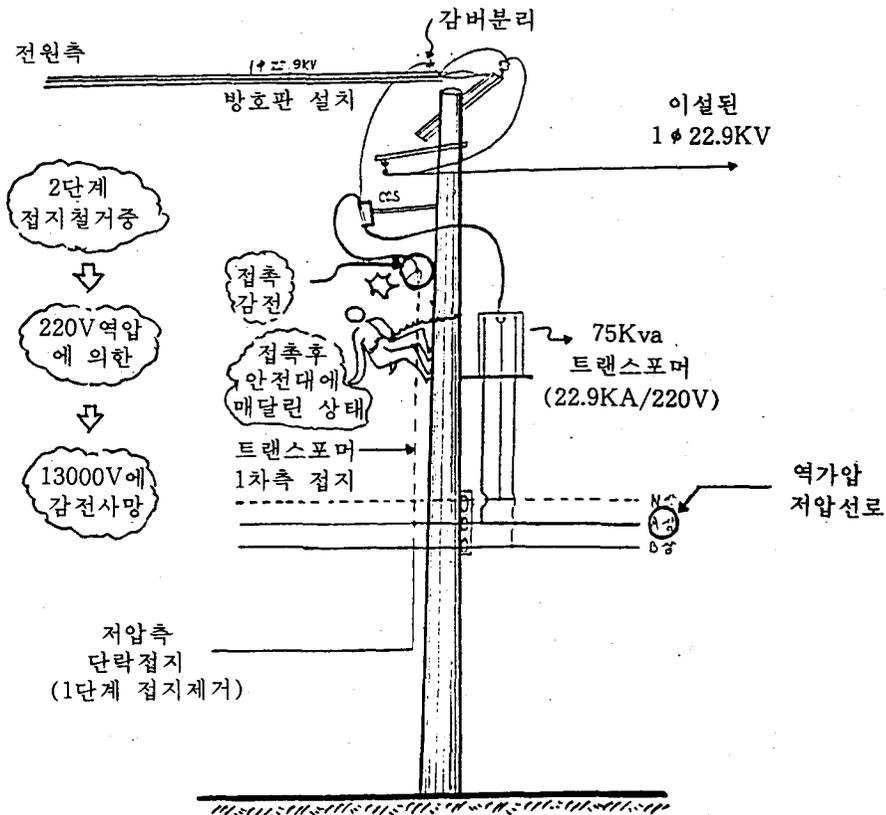
## 4. 재해예방대책

- 정전작업 조치
  - 감전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당해 전로를 개로한 후 작업실시
- 정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정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활선작업에 따른 안전상 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실시
  -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
  - 당해 작업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 착용

## 4-2 지상전선 이설작업중 역압에 의한 감전 사망

### 1. 재해개요

'93. 10. 22. 10:20경,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소재, ○○전기(주) 정양읍 ○○○ 지상전선 이설공사 현장에서, 전공인 피재자 ○○○(34세)가 동료 3인과 신축중인 2층 슬라브 건물과 22.9KV 및 중성선의 이격거리 확보차 선로 이설작업을 완료후 접지선로와 연결시킨 22.9KV 선로를 해체하던 중, 역압에 의하여 감전 사망한 재해임.



(재해 상황도)

## 2. 재해상황

- 사고당일 피재자의 1인은 전주 상부 22.9KV이설작업중이었고, 나머지 동료 2인은 220V선로 이설작업중이었음.
- 사고당시 작업을 완료하고 전주로부터 내려오던 중, 통전을 위해 제일 마지막으로 내려오던 피재자가 트랜스포머 2차 저압선 접지를 제거하고 접지선로와 연결된 CUT OUT S/W 1차 선로를 해체중, “악”소리와 함께(220V역압에 의한 13,000V에 감전)안전대에 걸려 쓰러짐.
- \* 통전경로: COS 1차 리드선 → 왼손 → 심장 → 오른손 추정

## 3. 재해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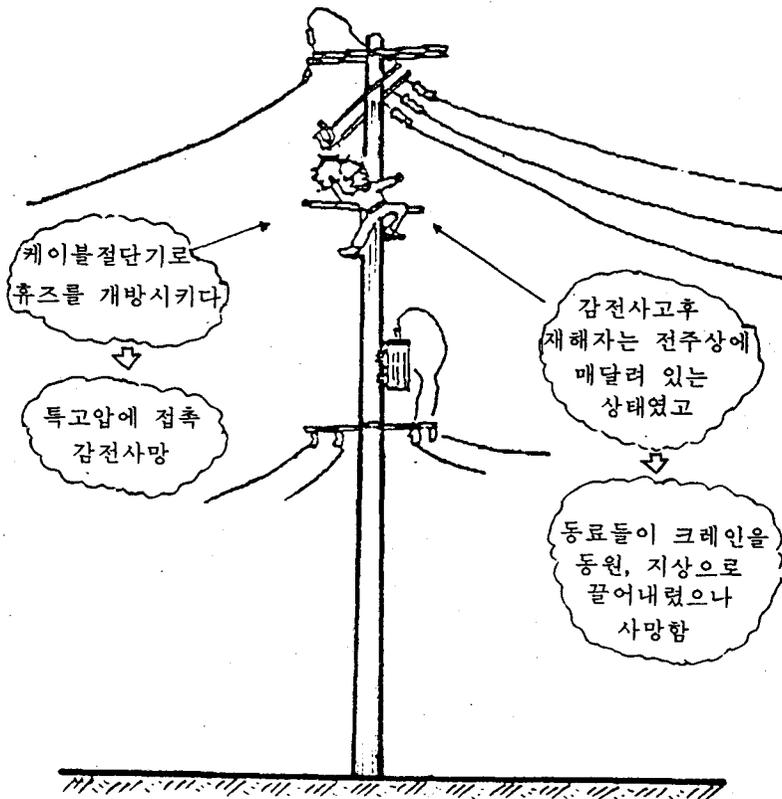
- 작업전 타선로에 의한 역압여부 미확인
- 접지 제거 순서 미이행
  - 1차측 22.9KV 선로접지 해체후 2차 저압선로 공동 접지선을 해체해야 함.
-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미실시

## 4. 재해예방대책

- 작업전 반드시 역압에 의한 안전조치 실시 (트랜스포머 2차측 개방 등)
- 접지 제거 등 주요작업 실시시 작업 책임자가 직접 작업지휘
-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

## 1. 재해개요

'93. 11. 25. 15:00경, 경북 울진군 소재, ○○전기가 시공하는 온정 오수처리장 전기회선 증설 인입공사 현장에서, 전공인 재해자 2명이 전주위의 완금에 전선 설치작업중, 비상발전기 가동에 따른 특고압 역승전(220V→2,600V)으로 전격을 느껴, 재해자 ○○○(전공,32세)이 변대주의 COS를 개방시키려고 케이블 카터기로 COS파워 휴즈를 내리치는 순간 COS, 충전부(특고압 12,600V)에 접촉 감전 사망하고, 전주상에서 작업을 하던 ○○○가 손과 발에 화상을 입은 재해임



(재해 상황도)

## 2. 재해상황

- 대우전기 작업반 10명이 10:00시 부터 4조로 나눠 전날 바닥에 포설한 절연전선(Aℓ-OC 58MM<sup>2</sup>) 660M 2조(1320M)를 콘크리트 전주(12M) #1-#12전주위 완금에 설치작업 실시
- 15:00경 특고압 변대전주 #10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재자 ○○○이 “유도전기가 발생한다”고 ○○○에게 말하자 김응섭이가 “유도전기가 아니고 역송전에 의한 특고압이다”고함을 지르며 비상발전기를 끄라고 고함치자
- 작업자들이 전주에서 내려오고, 피재자인 ○○○도 전주에서 내려와 #10 전주에 걸쳐있던 전선 절단용 카터를 가지고 전주에 재승주하여 수용가전원 차단점인 #10번대주의 COS를 개방시키려고 COS의 절연체 부위 POWER FUSE를 정조준하여 내리치려는 순간, COS충전부에 접촉(특고압 12,600V)감전 사망하고, #12전주에서 작업하고 있던 전공 ○○○도 특고압 역송전에 의해 오른손 및 좌우측부에 화상을 입은 재해임.

## 3. 재해원인

- 활선작업용 기구 미사용 (안전규칙 제350조)
  - 핫스틱(HOT STICK)등 봉상의 특별고압 절연공구를 사용하여 휴즈를 개로시켜야 하나 케이블 절단기로 COS POWER FUSE를 개로시키다 사고발생
- 정전 작업시의 안전조치 미이행(안전규칙 제342조)
  - 전로를 개로시킨후에는 시전장치, 단락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
- 정전작업요령 미작성 (안전규칙 제344조)
  - 감전방지를 위해서 정전작업 요령을 작성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미실시
- 수용가의 불량 전기설비 설치사용
  - 정전을 대비한 비상발전기 설치시에는 사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동시에 투입되지 않게 설비를 설치하고 조작방법, 관계자의 스위치 투입금지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나 미실시

## 4. 재해예방대책

- 활선작업용 기구(핫스틱)사용 및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 거리 유지(안전규칙 제350조)
- 정전작업시의 안전조치(안전규칙 제342조) 준수 철저
- 수용가의 비상전원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
  - 정전을 대비한 비상발전기 설치시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동시에 투입되지 않게 비상용 전원 절체개폐기(ATS)등을 설치 사용토록 함.